

#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2023.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23. 12. 6.(수) 10:30~12:00
- ◆ 장 소 : 본청 11층 공용회의실2
- ◆ 참 석 자 : 위원장 등 8명
  - 외부위원(6) : 모상현 위원장, 김경미 위원, 서은숙 위원, 이정희 위원, 양재진 위원, 이민옥 위원
  - 내부위원(2) : 정책기획관, 복지기획관(代 복지정책과장)
- ※ 배석 :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심의팀장
- ◆ 진행순서
  - 안건 심의(총 7건)
- ◆ 상정안건
  - 법정·지정위탁 사무의 재계획 추진 절차 보완 외 6건
- ◆ 회의결과
  - 적정 7건

## □ 주요발언 내용

【10시 37분, 개회】

### 〈위원장〉

- 그러면 시간이 됐고 성원이 됐기 때문에 '23년 마지막 제8차 민간 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시작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000입니다. 마지막 올해 8차 회의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참석하신 위원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000 위원〉

- 저 때문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복지기획관을 대신해서 000 복지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간위탁사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개정되는 관리지침에 반영될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7건이고, 민간위탁심의팀장이 보고한 후에 참석 위원 간 논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의결 유형은 동일하게 적정, 조건부 적정, 심의 보류, 부적정, 총 4가지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위원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주관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제 안건 심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건은 법정·지정위탁 사무의 재계획 추진 절차 보완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심의팀장 000입니다. 올해 10월 달에 민간위탁조례가 개정되면서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되고,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만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현재 바뀌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법정위탁이나 지정위탁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주요 개선내용을 보시면 제일 아래 표에 현재 법이나 고시에 의해

서 어떤 특정한 기관이 정해진 위탁의 경우에는 저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사무와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같이 심의하고 적격자심의위원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상에는 그 해당 사무에 대해서 재계약 할 때는 운영위는 안 하는데 또 적격자심의위원회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적격자심의위원회 자체가 불필요한 그런 단계인 것 같아서 이번에 지침 개정하면서 생략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법적으로 특정 기관을 일단 지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운영위는 진행하되 적격자심의위원회는 생략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논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혹시 위원님 뭐 별 다른,

### **<000 위원>**

- 저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없으면,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기 때문에 1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안건은 제3자 재위탁의 유형 및 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제3자 재위탁 관련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 10월 달에 민간위탁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제3자 재위탁을 할 때는 시의회 보고사항이었는데요 시의회에 사전에 동의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제3자 재위탁은 사실 보고였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들여 보니까 좀 보완해야 될 부분, 그리고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개선 내용을 크게 보시면 2페이지 아랫부분, 제3자 재위탁은 우리 시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건데 그 위탁 받은 민간이 또 다른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경우가 제3자 재위탁에 해당되는데요, 그게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연구용역을 그 해당 민간위탁 업체에서 또 다른 데 줄 수도 있고 그게 사무의 제3자 재위탁에 해당되는데, 그럴 경우에 현재 기준상에 보면 사업비의 50%가 넘어가게 되면 제3자 재위탁으로 보고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무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에 그런 게 편성이 돼서 그냥 언뜻 보면 전체 예산이 10억이라고 그러면 그중에 한 6~7억을 다른 사람한테 쥐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시설 청소 그런 것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했고요.

3페이지에 시설의 제3자 재위탁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우리 민간위탁시설에 갔는데 1층에 카페가 있거나 매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사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복지법인에서 매점을 잘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맡길 때도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 내용을 사실 2번 시설의 제3자 재위탁은 지금 민간위탁지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걸 언제 동의를 받아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또 사실 혼선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3페이지 아래 표에 보시면 신규나 재위탁 할 때는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 동의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제3자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시켜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재계약 할 때는 기존에 제3자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계약 보고를 할 때 그냥 보고사항에 포함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전에는 제3자 재위탁 내용이 없었다. 그러면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 동의를 받았을 때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사무를 추진하다가 서울시랑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제3자 재위탁을 하는 게 맞다 싶으면 그때는 시의회 동의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가지고 부서에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보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심의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표출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 〈000 위원〉

- 합리적인 것 같아요.

## 〈000 위원〉

- 저는 말하자면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시 민간위탁 받은 업체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의 승인을 구한다든가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은데 의회의 동의까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재량으로,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이것은 이미 조례가 통과된 내용입니다.

## 〈000 위원〉

- 조례가 이렇게 돼서,

## 〈위원장〉

- 밑에 있는 규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지금 상위에서



치니까 밑에서는 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운영돼야 되니까요.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어떻게 보면 저도 1년 정도 했지만 우리 운평위 심의할 때도 사무적정성에 대한 심의는 강하게 하지만 이것을 제3자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그만큼 관심을 받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동의사항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점들이 많이 보여서 지금 보완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이것은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세부지침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 이 지침(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 **<000 위원>**

- 그렇다면 이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번 안건을 일단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번 안건은 중요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에 대한 전결권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팀장님 보고 부탁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3번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쯤에 서울시 바로세우기 하면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강화하면서 결재 권한을 그전에는 실·국·본부장님까지만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결재를 받았었는데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이 되는 사무는 무조건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게끔, 그러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부담되는 그런 조항을 넣어놨는데,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신규가 됐건 아니면 금액이 좀 큰 사업들은 그 개별 민간위탁만 단독으로 뭔가 한다기보다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 예를 들면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그런 것 안에 키즈카페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업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고 기자 발표까지 다 했는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공모를 어디 어디다가 하겠다 그런 내용까지 부시장님까지 다시 방침 받는 것은 행정력 낭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싶어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20억 원 이상의 재계약·재위탁이나 신규는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하는데 그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본방침이 있으면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실·국·본부장님까지만 결재 받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부서의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큰 20억짜리 어떤 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부시장 전결권 인정을 해주되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다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은 실·국장 전결로 가자는 얘기죠.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방침을 받기 전에 큰 모방침을 받을 때 이미 시장까지 받았고, 그 안에 이미 방침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걸 포함했는데 또 다시 그걸 부시장까지 해서 전결로 가는 것은 행정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 〈위원장〉

-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장 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실·국장 전결 받을 때 부시장한테 그 사업에 대해서 전결 받은 걸 첨부하면 되겠죠.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이미 부시장을 거쳐 시장까지 갔는데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게 되니까요.

### 〈위원장〉

- 그건 어떤 기관이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몇 십 억짜리 큰 사업 우리 원장이라든지 총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

면 시장 전결 받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만 기안문에 첨부해서 진행하는 방식,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없으면 3번 안건도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안건은 신규·재위탁 공모 시 적격자심의 평가기준의 기존 수탁 사무 관련 정량적 감점 항목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였던 부분의 하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보고 부탁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사실 오늘 이 운영평가위원회를 하기 전에 저희가 민간위탁 거버넌스라고 그래가지고 수탁기관 대표님들, 그리고 부서에 실제 그 사업을 하시는 팀장님들하고 같이 자문회의 성격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었는데, 그때 이 건에 대해서 다들 의견들이 많으셨었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평가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신규나 재위탁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그 업체들이 낸 제안서를 가지고 경쟁하는 평

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표 상에 각 업체가 기존에 우리 시 사무를 수행했을 때 지도점검 결과라든지 회계감사, 종합성과평가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필수적으로 7점까지 감점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점사항이 정성평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평가를 할 때 감점이 7점까지 줄 수 있는데 감점을 아예 안 하신 분도 있고, 최대 감점으로 하신 분도 있고, 그게 제각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할 필요도 있지만 뒤에 표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재계약 종평 할 때 75점 미만이면 재계약이 배제됐잖아요. 그런데 그 재계약 배제된 업체가 재위탁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는 사실 감점을 줌 주는 게 맞는 것이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것은 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성격의 것들을 정량평가로 일부를 돌리려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부분에 필요성 두 번째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 때문에 조금 들어간 부분인데, 조례 개정내용에 적정한 위탁사무의 규모와 건수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선정기준 수립. 이게 조례에 왜 들어갔냐 하면 어떤 업체들, 어떤 특정 업체가 너무 다수의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이게 모법인의 관리 한계, 능력이 그게 줌 못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점으로 주되 어떤 업체가 굉장히 규모가 큰 업체가 한 5개, 10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 1점인 것은 아니고, 그 업체가 능력이 뛰어난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실 시 입장에서도 파트너 관계가 되는 건데 능력이 안 되는 업체가 와서 PT만 잘해가지고 그걸 따간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심사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서 정성평가 부분에 집어넣는 식으로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 기존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사항이 정성평가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정량평가 항목에 종평 재계약 배제기준, 그리고 우리가 회계감사 할 때 회계감사 지적사항은 나올 수 있는데 사업비 집행 부적정에서 환수액까지 발생했다. 그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서 정량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경우는 거의 있지는 않은데, 주요 비위행위에 채용비리라든지 그렇게 된 업체가 있더라도 사실 우리가 협약 해지는 할 수 있는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1점.

그리고 최근 2년 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으면 현재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2년 안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가 해제된 업체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정량으로 해서 부서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마이너스 최대 3점까지 하고요.

그 아래 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관련 절차 위반, 그리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위반, 복무 위반, 서류 미비. 이런 부분은 사실 점수

를 감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사안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최대 마이너스 4점까지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 〈위원장〉

- 그래서 기존에 정량하고 정성으로 두 개로 나누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기존의 업체가 새로 신규 공모할 때 일단은 이 사실이 있으면 이 기준에 의해서 감점 처리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네네.

### 〈위원장〉

- 그런데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때, 그 부분이 계속 걸리거든요.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리고 하나 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민간위탁 거버넌스 회의할 때 업체 관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무조건 기존 업체한테 이것은 감점 주고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새로 들어온 업체는 감점 없이 들어가니까 이전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본 게 A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던 업체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그때 발생한 재계약 배제기준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서 감점을 100% 적용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B나 C 사무를 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1점을 하는 것은 너무 큰 페널티 같아서 저희가 생각한 게 해당 사무에 대해서는 100% 적용을 하고 다른 분야나 완전히 전혀 다른 사무에 대해서 할 때는 그 감점 비율을 30% 정도 적용하는 게 어떨까 해서 비율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 **<000 위원>**

○ 주요 비위행위라는 게 뭐예요?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채용비리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사업비 집행 부적정이 따로 있는데 사업비 횡령 그런 사항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도 있고요.

### **<000 위원>**

○ 이것은 기존에 말았던 법인이나 업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신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신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 **<000 위원>**

○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 비위행위면 그것은 업무영역이 달라도 그건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 〈000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평가기준에 보면 업무 수행 경험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은 기존 업체가 유리하잖아요. 이미 기존 업체들은 유리한 상황에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새로 들어온 신규업체나 그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불리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경쟁을 하게 돼서,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유불리라기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업체하고 좀 덜한 업체인 거죠.

## 〈000 위원〉

- 그래도 이미 실적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저희가 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기존의 뭔가를 시스템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가 경험이 많다고 정성적으로 평가를 할 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쪽은 조금 더 유리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비리가 있었는데 감점을 시키는 건 저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차별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기존 업체가 유리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비리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그게 시그널이 있어야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재위탁 되는 데가 안 될 수 있다라는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서 저는 관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러시면 위원님 말씀은 이 비율 적용하는 부분은 굳이 필요 없겠다는 말씀이시고.

### **<000 위원>**

-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기존 업체가 아무래도 평가 시에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 신뢰도나 업무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조금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000 위원>**

- 주요 비위행위 두 가지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1점이라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큰 건지. 그걸 0.5로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비위행위를 한 번 하면 그게 계속 따라붙는 건지, 아니면 최근 2년, 3년에 대해서 그 문제를,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최근 3년.

### **<위원장>**

- 두 분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랬을 때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정도 제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

는 큰 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큰 법인들이 보면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4~5개, 6~7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 시설에서 어차피 사고가 터지잖아요? 터지면은 나머지 6~7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법인들이 크다 보니까 우리 서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지만 나름대로 역량 있는 또 다른 법인이 들어와. 그런데 그 법인도 운영을 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비리 하나 저질렀을 때 그 업체는 이것 하나 때문에 6~7개 나중에 또 재위탁 받을 때 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줄줄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괄 적용이냐, 선별적으로 이것을 선별의 적용이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거죠.

### 〈000 위원〉

- 이게 선별적으로 적용을 시키다 보면 저는 우리가 평가기준의 명확성,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어떤 경우에 위원이 그렇게 범위를 정해버리면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굉장히 그것을 구분하기가 힘들고.

### 〈000 위원〉

- 위원장님, 그건 정량평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이 신경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7페이지에 있는 표를 같이 한번 좀 봐주시면요. 그래서 아까 처음 설명을 드릴 때 각 개별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변경 되면 안 되고, 반드시 감점이 필요한 부분은 정량평가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고,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정성평가로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좀 의견이 있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A 사무를 수행하던 기존 업체가 다시 재위탁에 들어왔을 때는 마이너스 1점이고 그걸 그대로 하는데 C 사무에서 그런 재계약 배제사유가 생긴 걸 가지고 A 사무의 재위탁에 들어왔을 때 반영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사실 복지시설 같은 데는 5~6개씩 막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되게 규모가 큰 데들. 그런데 그런 데서 재계약 배제 점수가 5개 중에 1개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나머지 4개 사무에 재위탁을 할 때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1점을 주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 **〈위원장〉**

- 제가 아까 선정이라는 게 그 시설에만 국한시킬 것이냐, 그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을 다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딜레마가 있다는 얘기죠.

### **〈000 위원〉**

- 법인이 운영하고 시설이 여러 개 있으면 시설은 거의 독자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위원장>**

○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사실상 센터장을 뒤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데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한 데도 그게 사고가 났는데 전체의 어떤 책임으로 볼 것이냐는 그 문제입니다.

**<000 위원>**

○ 전체에 동일한 책임을 물을 건 아니지만 책임은 물기는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000 위원>**

○ 모법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위원장>**

○ 그렇죠. 그 책임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

**<000 위원>**

○ 그건 있는데 책임의 정도를 다 그냥 똑같이 할 것인가.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또 하나 문제는 법인이 클 경우에 분야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  
거든요.

### **<위원장>**

- 많이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 **<위원장>**

- 보면 시설도 운영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 뭔가 운영이 있겠죠.

### **<000 위원>**

- 큰 곳에서는 사고가 어떻게 보면 더 날 확률이 높는데.

### **<위원장>**

- 그런 딜레마가 있다. 그러면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  
을 합니다. 사건 터진 데에 대해서는 일단은 간다고 하더라도 그와  
연관지어서 모법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조치를 취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책임에 의거해서 뭔가 물으려고  
한다면 감점사유는 분명히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가  
져갈 것이냐.

### **<000 위원>**

○ 아까 그것을 30%로 말씀하셨는데 30% 감한다는 것 아니에요?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부서에서 그 자료를 보고 그냥 점수를 확정 짓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점이 아니라 다른 사무면 0.3점 마이너스인데, 그것도 사실 5개 그 A 말고 나머지 것들에서 2개에서 그러면 또 0.6점이 되고, 3개에서 그러면 0.9점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 그렇죠. 법인의 책무성 강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한 6~7개, 8~9개 되는 법인들은 굉장히 역량 있는 법인이고 잘 운영했는데 하다 보면 사건들이 터질 수밖에 없는 사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사실상 센터들이 모법인이 있지만 거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 〈000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라고 한 게 아니고 관리감독하라고 법인의 역량을 보고 평가를 하고 했잖아요.

### 〈위원장〉

○ 맞습니다. 그렇죠.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감점은 해야 되는데 혹시나 문제는 이쪽 분야가 다른 분야로 들어왔을 때도 그러면 감점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까지 발생하거든요.

### 〈000 위원〉

○ 학교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 어느 한 사업단이 연구를 잘못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00대학교 전체가 입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 〈000 위원〉

○ 우리가 공기업 경영평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다 이게 본부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경영자 한 곳에서 비리가 일어나면 어쨌든 그 위탁 받고 있는 공공기관이 전부 다 등급이 한 등급씩 다 떨어지거든요. 지금 굉장히 크게 페널티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페널티를 주는 게 지금 평가의 방향이고 이래서.

저는 어쨌든 하여튼 일부분의 여지를 주면서 다 피해가 크게 갈까 봐 일부분 봐주고 이러는 것은 저는 평가의 기준상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운영상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때 나온 것은 어느 하나의 시설만 위탁하는 업체랑, 모법인이랑 다수를 하는 모법인이 오히려 다수를 하는 모법인이 능력이 뛰어나도 있는데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고 제기했던 겁니다.

### **<000 위원>**

- 이걸 뭐, 글썄요. 타협안으로 마이너스 0.3이 아니라 0.5 정도.

### **<000 위원>**

- 그걸 표현을 차별이라고 하면 안 되고.

### **<위원장>**

- 어쨌든 관리감독에 대해서 본인들이 분명히 그 모법인에 책무성이 있습니다.

### **<000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서 여러 군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또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런 걸 다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 **<위원장>**

- 그러니까 그만큼 도덕적인 책무성도 갖춰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인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0.3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000 위원>**

○ 한 70% 정도 하면 어떨까요?

**<000 위원>**

○ 이게 2개, 3개 되면 가중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큰 법인에서 하다가 트라이 했는데 다 탈락해버려.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역량이 있는 노하우가 몇 십 년 축적돼 있던 그 법인 하나를 또 날릴 수밖에 없는.

**<000 위원>**

○ 그런데 다른 법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 많이 없어요. 역량 있는 법인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000 위원>**

○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쪼개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 안에서 그 법인이 자기들이 논의해가지고 서

서히 이렇게 해나가면서 산업이 그렇게.

### 〈000 위원〉

- 시간이 걸리겠죠. 맞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약간 혼돈이 일어난다는 문제 때문에.

### 〈위원장〉

-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큰 법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 법인들 같은 경우 잘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가다가 사건들이 터집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긴급하게 대응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도덕적 책무성에 관한 페널티 주는 건 오케이. 그런데 법인까지 날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각성할 수 있고, 뭔가 좀 새롭게 대응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약간 페널티를 주면 어떨까.

### 〈000 위원〉

- 제 생각에는 사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꽤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을 쪼갬다든지 등등.

### 〈000 위원〉

- 그런데 쪼개는 식으로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형화가 되는 게 맞지.

## 〈000 위원〉

- 제 말씀은 지금 페널티가 아주 강력한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균형에 있는 상태지 과한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렇게 두는 게 낫지 않나.

## 〈000 위원〉

- 특정 사업에 법인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예외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 평가의 기준상 맞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안을 어떤 걸로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평가기준은 항상 다 공평해야 되고. 그러니까 1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그냥 적용을 시키고 아닌 데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정성적으로 고려해 주는 것은.

## 〈000 위원〉

- 그런데 이게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마이너스 1점은 다 똑같은 것이고, 타 사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감안이 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미 기존에 정량적으로 주요 비리행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점을 전제하고 플러스로 고려해야 되는 평가이기 때문에.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보시면 그게 해당 사무가 아닌 다른 수탁사무에서 발생한 경우거든요.

**<위원장>**

- 다른 수탁에서 발생한 경우 몇 % 정도 가중치를 일단은 줄 것이냐.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둘 것이냐, 그럼 둔다면 몇 % 둘 것이냐.

**<위원장>**

- 저는 30% 정도.

**<000 위원>**

- 주는 건 저도 맞다고 보고, 당연하고.

**<위원장>**

-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000 위원>**

-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정량에 감점이 4개 항목에 최대 마이너스 1점까지 줄 수 있는데 왜 0점에서 마이너스 3점이에요?

**<위원장>**

- 4점이 돼야 되겠죠.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이게 2개 정량, 정성 도합에서 기존에 7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 아랫부분에도 더하면 또 4점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래도 항목이 4개가 있으니 항목이 4개면 어쨌든 0에서잖아요. 범위를 쫓으니까 범위는 0에서 마이너스 4점까지 해야 되죠. 이게 3점까지로 해버리면 맥시멈 3점까지만 감점하게 되면 무조건 다른 데는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3점이 있었으니까 범위 내니까 정량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항목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4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 레인지는 4점으로 가는 게 맞고요, 3점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도 궁금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점 다 안 줄 수도 있고, 정량이지만 4점이 될 수도 있겠죠.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최대가 3인 것이고, 4개여도 마이너스 3, 3개여도 마이너스 3인 것이고.

그런데 이게 실무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재계약 배제기준이 되기도 사실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비 부적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고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원스트라이크 아웃 된 업체는 사실 부서에서 협약을 해지할 정도면 다음에 다시 거의 들어오는 사례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라는 것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준하는 굉장히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업체들만 이것은 되기 때문에도 4가지 사항이 다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사업비 집행 부적정, 그것 하나만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 **<000 위원>**

- 그러니까 3점으로도 충분하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네네.

### **<000 위원>**

- 어차피 이게 정성적으로 봤을 때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정량적인 걸 만들면 차라리 정량적인 것을 점수 배점을 높게 두고 4점을 두고 정성적인 것을 적게 뒤서 거기서 어느 정도 아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 〈000 위원〉

- 저도 서 위원님에 동의하는데, 보통 모금회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에만 감점이 있거든요. 예산하고 사업하고 그냥 나눠서 회계하고 사업하고 나눠서. 그래서 그냥 저는 굳이 정성평가에서 이렇게 감점이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고, 그냥 다 이걸 정량평가로 올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000 위원〉

- 그래서 아까 정성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적용해야 되는데,

## 〈위원장〉

- 다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 적용되는 점수를 많이 넣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게 개선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물론 3점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아예 그냥 이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 감점에 계량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다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0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특히 여기에 환수액 발생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0.5에서 1.4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가 명시적으로 볼 때 계량적으로 훨씬 더 많이 계산을 했고, 이게 형평성이 있는 평가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성적



인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케이스별로 감점에 대한 고려를 해 주는 것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저는 공고일 기준 중복수탁 현황도 이게 0에서 0.5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꼭 0.1점 이상을 이렇게 감점을 해야 될,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정말 몇 개를 하든 성실히 잘 위탁이 됐다면 감점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 〈위원장〉

- 네, 저도 그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 〈000 위원〉

- 그게 꼭 0.1점부터 시작을 하면 0.1점을 중복되면 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 〈위원장〉

- 그건 사고가 터지지 않은 업체조차도 중복수탁 했을 경우 일괄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 〈000 위원〉

- 지금 여기 저도 그렇게 읽혀져서.

### 〈위원장〉

- 그러면 법인들 중에 큰 법인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보면 청소년시설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큰 어떤 수련관 같은 데도 있고 작은 문화의 집도 있고, 남들 위탁 받기 싫어하는 쉼터를 위탁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위탁 안 받으려고 그래요. 속된 말로 돈도 안 되고.

### **<000 위원>**

- 그게 아니고, 일단은 사업계획상 있었던 것을 이행해야 되는데 미이행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잘 익혀지지 않아서.

### **<000 위원>**

- 여기는 공고일 기준 중복수탁 현황이면 그냥 중복수탁만 하면 0.1점에서 0.5점을 감점해야 되는 걸로 읽혀서.

### **<위원장>**

- 그러면 쉼터 같은 경우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누가 아무도 안 하죠.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0점에서 시작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예, 0점에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런데 저희가 0.1점으로 시작한 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필요성 2번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했었거든요. 조례상에서,

### 〈000 위원〉

- 과다수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점요소를 주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0.1점부터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점부터 시작해도.

### 〈위원장〉

- 한 가지 전제가 수탁 받기 싫어하는 기관들 억지로 수탁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보면 여기 이 규정이 들어가면 그럼 이거 안 합니다.

### 〈000 위원〉

- 복지 쪽에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 〈위원장〉

-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억지로 울면서 꺼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감점하면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 〈000 위원〉

○ 할 수 있으면 0점에서 시작하시는 것으로.

### **<000 위원>**

○ 네, 0점으로 하시죠.

### **<위원장>**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0점으로 하시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러면 정량적 평가 분야의 감점은 0점에서 최대 4점까지로 하고요. 정성적 평가 분야의 감점은 0점에서 3점까지로 하고. 모집 공고일 기준 중복수탁 현황은 0점에서 0.5점까지 감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리고 여기서 민감한 부분은 사건이 터졌을 때 법인의 책무성 관련해서 그 감점기준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아까 그 비율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결정을 해 주시면,

### **<위원장>**

○ 30%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 **<000 위원>**

○ 최소 50%쯤 돼야.

### **<위원장>**

○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어렵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탁 받은 기관들이 안 하려고 하는 기관들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가 봐요. 우리는 그 기준만 생각을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나 봐요.

### **<위원장>**

○ 많이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런데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번에 민간위탁 거버넌스 할 때는 요 단서조항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그대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그 안을 만들었는데 사업부서하고 수탁기관 대표님들 오셔가지고하시는 말씀이 하나같이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하고 있는데 감점까지 주면서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공여지책으로 마련한 게 단서를 달아가지고 해당 사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동일하게 하지만 다른 사무를 하는 것까지,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게 연좌제라는 표현까지 나왔었거든요. 다른 사무에서 잘못된 것까지 이 사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비율도 사실 50%, 30% 고민을 하다가 하나만 더 하면 50%도 관계없는데 2개, 3개 하다 보면 사실 다른 데서 1점 넘을 수도 있어요.

### 〈000 위원〉

-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희는 서로 하려고 해서.

### 〈000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해당 사무하고 다른 사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명확한 사전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지금 어떤 사무에 대해서 재위탁 하면 공고가 나가거든요. 무슨 무슨 복지관에 대해서 나가면 그 복지관을 했던 업체가 다시 재위탁에 들어오면 해당 사무고요.

### 〈000 위원〉

- 재위탁의 경우 해당 사무고, 재위탁이 아니면 관련이 없는 거예요?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A 복지관이 다시 A로 가느냐, A가 B로 가느냐.

### 〈위원장〉

○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노원 무슨 청소년센터가 있다. 기존 업체가 운영했다. 그런데 다시 하면 그건 A에서 A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릉문화센터에 했다면 A에서 B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설이 좀 다르면 다르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법인의 책무성에 대해서는 꼭 물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논의됐듯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고민 끝에 한 30%라고 하는 그런 비율이 도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00 위원〉

○ 다수결로 하셔야죠. 저는 끝까지 50%까지예요.

### 〈위원장〉

- 4번 안건은 한 분이 반대하셨지만 걱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회의록에 남겨놓으시고요.

###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소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충분히 이해는 돼요.

### **<위원장>**

- 5번 안건은 재계약에 대한 적격심의 평가기준에 추진실적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5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9페이지에 있는 표를 봐주시면 설명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는 신규하고 재위탁 공개모집의 경우였고요, 재계약은 기존 업체가 다시 그 사무를 연장해서 계약하는 경우인데요. 그 평가항목 예시를 보면 전부 다 정성평가만 있고요 계량화 된 지표는 없었습니다. 사실 계량지표를 마련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동안 없었던 것 같은



데 저희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으면서 재계약의 경우에도 정량지표를 집어넣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저희 종합성과평가도 하지만 성과관리 컨설팅을 하면서 업체가 새로 선정이 되면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 목표 대비 최종 달성도에 대해서 5점. 그리고 종합성과평가는 5억 원 이상의 모든 사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점수에 따른 5점. 그런데 만약에 종평을 안 하게 되면 목표 대비 달성도를 10점으로 하고요.

그리고 회계감사 결과 불인정은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저희가 환수하는 그런 것과 지적된 건수. 그리고 지도점검에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조치한 건수에 대해서 각각 5점으로 해서 최대 20점까지 정량적 평가 분야를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이고요.

9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파란색 칠해진 데를 보시면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점수 구간별로 예시를 달아가지고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이걸 종합평가 결과 플러스 알파인 거죠. 원래 종합평가 결과를 일단은 받지 않습니까.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러니까 종평 결과 75점 이상이면 재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데 재계약이 가능한데도 위원님들 운평위 하시면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76점, 77점으로 재계약되는 데랑 80점 넘는 데랑 그게 사실 좀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등해서 점수를 주자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일단 알다시피 99점짜리도 있고 95, 75 있으면은 차등해서 그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재계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중치를 좀 두자. 그래서 정량적인 지표 지금 내용별로 그런 식으로 평정기준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 〈000 위원〉

- 어쨌든 총점 70점 이상이면 재계약이,

### 〈000 위원〉

- 75점.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재계약은 70점입니다. 75점은 재계약 배제 점수 종합성과평가고요,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70점이 넘으면 합격.

### 〈000 위원〉

- 어쨌든 70점인데 정량적 평가가 20점을 차지하게 되면 이게 굉장

히 당락을 결정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이게 기준이 큰 것 아닌가 싶어서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20점 이게 최대니까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앞에 재위탁이나 신규 할 때도 정량적 평가가 20점이거든요. 그리고  
고 가격평가가 또 있어가지고 오히려 신규나 이런 것 할 때는 더  
많습니다.

**<위원장>**

○ 그리고 정량적 평가 분야에 대해서 점수를 정량화해서 지표화 했  
다는 데 의미를 좀 두고. 전에 비해서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  
을 것 같습니다. 약간 개선방안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000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양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 〈000 위원〉

- 예예.

## 〈위원장〉

- 그러면 5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번 안건은 수탁기관에서 단시간 근로자 등 채용 시 공고기관 예외규정 신설에 대한 사안입니다. 팀장님 보고 부탁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6번 채용 공고기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건들은 조례가 개정되거나 아니면 감사위원회 지적 그런 것들로 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해서 외부적인 요인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실제 부서하고 수탁기관들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의견이 나온 건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기관에서는 채용을 할 때 무조건 15일 이상 공개모집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 공고를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서울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7일 정도로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승인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거기서 공문으로 보내고, 또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승인한다라고 이렇게 보내는 절차들이 있는데, 행정

절차가 좀 있는 거죠.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은 3개월 미만의 기간  
제나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채용할 때 그  
수탁기관에서 즉각적으로 공고를 내고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같음하려고 예외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이게 하다 보면 직원이 갑자기 퇴직하는 경우 그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사업 종료기간이 2~3개월 남  
았는데 사람 빨리 써서 그 일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길다. 그러다 보면 한 달 훌쩍 넘어간다. 그걸 좀 짧게 해서 그 사  
업기간 내 3개월 정도 이내에서 신속하게 채용해서 일을 진행하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이렇게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3개월 미만 기간제나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도 적어도 7일  
은 해야 된다는 이런 거죠?

### 〈위원장〉

- 최소기간이 공고를 7일일 수밖에 없다.

### 〈000 위원〉

- 7일도 긴 것 같은데요.

### 〈위원장〉

○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래도.

### **<000 위원>**

○ 다른 것도 주 15시간이고 하루에 2시간 일하는 사람 쓰는데 무슨 1주일이나.

### **<000 위원>**

○ 행정적인 절차에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하기는 몇 시간 만에라도 하기는 하는데.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저번에 그런 의견도 있었고 좀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채용할 때 공고기간을 어디 명시한 법이나 규정은 못 찾았어요. 사실 민간 같은 경우에 바로 그냥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이라서 그런 건데,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그런 데 보면 7일 이상이 있고 15일 이상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 그것에 준해서 아마 이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그것을 더 낮춘다. 그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3개월 미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은 안 될 것이고요. 그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때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공무원 전환되면서 그런 부분

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규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일을 좀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의견,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 없으면 6번 안전도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안전은 수탁기관 수행 사무에 대한 시의 지도점검 횟수를 완화할 수 있는 조건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팀장님 보고 부탁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수탁기관 지도점검 관련입니다. 저희 민간위탁조례상에 보면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리지침에 따라서 '22년부터 연 2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이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나가는데요 '23년 올해부터 또 예산회계, 그리고 인사노무에 대해서 저희 조직 담당관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수탁기관을 방문하게 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을 추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1년에 3번 지도점검을 받는 그런 체감효과가 있었고, 사실 그건 좀 너무 과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부서에서 담당자 한두 명이 나가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회계사, 노무사가 가가지고 그 서류들을 봐주는 게 더 전문성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장 컨설팅을 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2번 이상인데 2번 지도점검보다는 한 번은 컨설팅해서 직무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 **<김수덕 위원>**

- 저도 이걸 처음 가져왔을 때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이게 지도점검 한 번 나가는 게 그 해당 기관에 더 부담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장 컨설팅이 더 부담되는 것이냐 했더니 현장 컨설팅이 더 부담되는 것이고,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현장 컨설팅이 훨씬 더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한 6개월, 1년 업무 한 직원이 가서 그걸 보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회계사나 노무사가 가서 보면 뭐 잘못된 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스러워 하죠.

### **<000 위원>**



- 그러니까 지도점검은 어쨌거나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체크를 하는 게 기록에 남는 것이고, 컨설팅은 내용을 보완해 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부족한 걸 보완해 주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 **<000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 좋습니다.

### **<위원장>**

- 순서는 컨설팅한 다음에 지도점검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000 위원>**

- 예를 들어 컨설팅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지도점검 감점요인이나 이런 체크리스트가 되나요?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체크는 다 하고 있고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 하반기에 지도점검은 실제 직원이 나가서 하면 되니까,

### **<000 위원>**

-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개선효과는 이게 오히려 더 높은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높죠.

**<위원장>**

- 그래야지 법인도 긴장 좀 하고. 그래야 사건 안 터지겠죠.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리고 지도점검은 사실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컨설팅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약간 컨설팅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7번 안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다수>**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면 7번 안전도 걱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상정 안전에 대한 심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참석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 특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일동 박수! )

【11시 29분, 폐회】